

담배소비세 신고서(수입판매업자용)  
([ ]기한 내 신고 [ ]기한 후 신고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              | 처리기간 | 즉시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신고인  | ① 성명(법인명)          |      | 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 |
|      | ③ 상호(대표자)          |      |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|
|      | ⑤ 주소(영업소)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| ⑥ 전화번호<br>(휴대전화: ) |      | ⑦ 전자우편주소     |

| ⑧ 담배의 구분 | ⑨ 품명 | ⑩ 규격 | ⑪ 판매 가격 | ⑫ 보세구역에서 반출된<br>외국산담배<br>(미납세·과세면제 제외) |      | ⑬ 공제<br>· 환급세액<br>㉔ | ⑭ 가산세<br>㉔ | ⑮ 납부할 세액<br>㉔-㉔+㉔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액 ㉔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⑯ 계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지방교육세 신고서

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
| ⑰ 과세 표준         | ⑱ 세율 | ⑲ 본 세 | ⑳ 납부할 세액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㉑ 가산세 |          |
| ㉒ 신고세액 합계 (㉑+㉒) |      |       |          |

「지방세법」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

귀하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첨부서류 |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·환급증명서(공제·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·환급증명서 총괄표(공제·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| 수수료 없음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
## 작성방법

□ 기한 내, 기한 후: 해당란에 [√] 로 표시합니다.

### □ 인적사항(신고인)란

- ① 성명(법인명): 개인은 성명,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- 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: 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③ 상호(대표자): 개인사업자는 상호명,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.
- ④ 사업자등록번호: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,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.
- ⑤ 주소(영업소)
  - 개인: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,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  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: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,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. 다만,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⑥ 전화번호: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(휴대전화) 번호를 적습니다.
- ⑦ 전자우편주소: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(E-mail 주소)를 적습니다.

### □ 신고사항란

- ⑧ 담배의 구분: 「지방세법」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담배를 적습니다.
- ⑨ 품명: 담배의 제품 명칭을 적습니다.
  - ㉠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.
  - ㉡ 「지방세법」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을 적습니다.
  - ㉢ 「지방세법」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

□ 문의사항은 시(군) 과(☎ - 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외국산담배에 대한 세액산출 명세서

( 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월 반출분 기준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납부할 총 담배소비세 <sup>1)</sup> (㉠)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전년 중 전(全)<br>시·군에서<br>매도된 담배  | 수량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배소비세 <sup>2)</sup> (㉡) |  |

[illegible]

- 1)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
- 2)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
- 3)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

### <작성방법>

1. 「지방세법」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합니다.
2.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하되, 특별·광역시(특별자치시·도 포함)는 시별, 도(특별자치도 제외)는 시·군별로 작성합니다.

※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69조제3항을 적용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본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.